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22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박균택·허영·박정
박정현·김주영·맹성규
송기현·박지원·안태준
홍기원·김남희·어기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하는 대신 자격증만을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유령 법인’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른 행정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이에 자격 대여 및 허위·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

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2조의2 신설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구축”을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공을”을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산림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한 행위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

행한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행위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하였거나 신고를 누락한 행위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
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
6.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
증을 사용한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u>구축</u>) ① ~ ③ (생 략)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u>구축</u> <u>· 운영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 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u>제공</u>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 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 ----- ----- ----- ---- <u>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u> <u>용을</u> -----, ----- ----- ----- ----- ----- ----- -----.
<u><신 설></u>	⑤ <u>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u> <u>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u> <u>요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u> <u>「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u> <u>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u> <u>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u> <u>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u> <u>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u>

⑤ (생략)

<신설>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2조의2(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산림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한 행위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한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행위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누락한 행위

	<u>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u> <u>6.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행위</u>
--	--